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8252 판결 [보증금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82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510837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C

변론 종결2017. 4. 26.

판결 선고2017. 6. 1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510837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남준우

판사박승혜